磻溪 柳馨遠의 商業觀과 商業政策論

白 承 哲

1. 머 리 말
2. '務本補末論'的 商業觀의 형성
3. 商業振興論과 그 內容
4. '利權在上論'的 商業政策論
1) 國家 管理下의 流通機構 建設
2) 貨權在上論的 銅錢鑄造·流通論
5. 맺 음 말

1. 머 리 말

兩亂이후 朝鮮王朝는 대내외적인 변화와 충격으로 말미암아 중세 봉건사회의 위기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한 國家再造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17세기 전개된 國家再造論은 논자들의 학문적 정치적 처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었다. 첫째는 貢案·兵制 등 賦稅制度의 釐正을 통해 대토지 소유자를 일정하게 견제함으로써 중·소지주와 농민층을 보호하려는 경향으로, 국가권력, 지배층의 과도한 대농민 수취를 완화하여 소농경영의 최저생산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립된 지주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주 즉 양반 사대부 중심의 國家再造를 완결지으려는 입장이었다. 이는 西人·老論系列을 중심으로 한 개량노선으로서 이들은 道統主義的 관점에서 朱子學을 절대시하고, 性理學的인 정치·사회 및 경제운영원리를 기본 이념으로 삼아 이를 실현할 때, 이 시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둘째는 賦稅制度는 물론 土地制度 자체까지도 개혁함으로써 대토지소유, 지주제를 해체시키고 小農經濟를 안정시키는 방안으로서, 종래 君主權과 民 사이에 매개되었던 향촌내 사적지배를 배제하고 국가의 공적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조선 봉건사회를 개혁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일부 南人·少論系列에서 취하

는 변법적 개혁노선으로서 朱子學의 사상체계를 반성, 비판하면서 原始儒敎, 漢唐儒學, 혹은 非儒敎的 思想과도 연결되는 가운데 朱子學의 사회운영 논리와 대립되는 새로운 체계로 현실극복의 논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체제 변혁과 『經國大典』 체제의 補修·改良을 둘러싼 방안의 제시 형태로 진행된 國家再造方略은 특히 經濟構造 문제와 관련하여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후의 社會經濟體制와 국가체제를 결정짓는 土臺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었다.(1)

柳馨遠은 17세기 전반에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날카로운 현실인식과 당시 國定敎學이었던 주자학을 상대화하는 비판적이고 실증적인 학문적 태도, 사상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국가제도 전반에 걸친 운영원리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완성하여 變法的 國家再造方略의 틀을 제시한 인물이었다.(2) 그의 改革案은 정치제도, 토지제도 등 제반의 제도 개혁과 그것의 운영법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도 치밀한 체계, 내용을 갖춘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목표는 국왕을 중심으로한 강력한 集權體制 形成이라는 목표와 연관 되어 있다.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그가 제시하고 있는 토지제도 개혁론을 살펴보면, 그는 우선 토지균분에 의한 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하여 民의 恒産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 기반 위에 국왕권으로 대표되는 公的 국가권력과 민을 직접 연결하여 중간수탈을 배

(1) 國家再造論은 17세기 朝鮮社會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官人·儒者들의 사회·정치운영론, 혹은 그 개혁론을 포괄하는 지배층의 현실대응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의 內容과 展開에 관해서는 金容燮, 1988, 『朝鮮後期農學史硏究』 111~113면. 金容燮, 1990, 『(增補版) 朝鮮後期農業史硏究(2)』 160, 411. 및 金駿錫, 1990, 『朝鮮後期 國家再造論의 抬頭와 그 展開』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2) 柳馨遠에 대해서는 千寬宇, 1952, 「磻溪 柳馨遠 硏究」 『歷史學報』 2·3 ; 鄭求福, 1970, 「磻溪 柳馨遠의 社會改革思想」 『歷史學報』 45; 元裕漢, 1971, 「磻溪 柳馨遠의 肯定的 貨幣論」 『柳洪烈敎授華甲紀念論叢』 ; 권영익, 1976, 「柳馨遠의 貨幣思想에 관한 硏究—화폐의 관리적 및 실천적 사고를 중심으로—」 『大同文化硏究』 11 ; 元裕漢, 1984, 「磻溪 柳馨遠의 商業振興論」 『弘大論叢』 15 (인문·사회과학편) ; 김무진, 1985, 「磻溪 柳馨遠의 郡縣制論」 『韓國史硏究』 49 ; 李佑成, 1988, 「初期 實學과 性理學과의 관계—磻溪 柳馨遠의 경우—」 『東方學志』 58 ; 金駿錫, 1990, 앞의 글 ; 尹用出, 1993, 「柳馨遠의 役制 改革論」 『韓國文化硏究』 6 참고.

제하는 방식으로 중세국가의 사회경제제도를 재편성하려는 방략을 제시하고 있다.(3) 즉 그의 토지제도 개혁론이 단순히 토지제도의 모순을 제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국가체제 전반을 개혁하려는 國家再造方略의 일환으로 구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유형원에게서 보이는 독특한 商業觀, 商業政策論이 갖는 의미와 지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가 구상하고 있던 국가체제 전반에 관한 개혁론 즉 國家再造論의 한 분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柳馨遠의 상업관과 상업정책론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것이 그의 國家再造論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務本補末論'的 商業觀의 형성

柳馨遠은 임란 이후 파괴된 현실경제를 부흥하고 民生을 안정시키는 한 요인으로서 상업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 想考하건대 工·商이 없어서는 안될 것은 士·農과 다름이 없다. 다만 이것을 생업으로 삼는 자가 너무 많으면 농업을 해롭게 하므로, 工商이 많으면 그 稅를 무겁게 하여 억제하고 적으면 세를 가볍게 하여 物貨流通의 길을 열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공산품의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고 물화가 유통되지 못하니 마땅히 그 세를 가볍게 해야 할 것이다.(4)

라고 하여, 農業과 商工業의 균형적인 발전이 국가경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위 자료를 통하여 우리는 반계의 상업관과 당시 조선사회에서의 상업발전 단계에 대한 그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상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경제활동의 한 분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업발전은 本業인 농업을 해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사회

(3) 柳馨遠의 개혁론에 대한 이와같은 관점에서의 연구는 金駿錫, 1990, 『朝鮮後期 國家再造論의 抬頭와 그 展開』(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吳泳敎, 1992, 『朝鮮後期 鄕村支配政策의 轉換 —17世紀 國家再造와 關聯하여—』(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이 참조된다.

(4) 『磻溪隨錄』 卷 1, 田制 上.

에서 경제의 중심은 본업인 농업이지만 농업만으로는 민생안정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공업 즉 末業으로써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務本補末論'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5) 셋째, 상업과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운영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商工業에 관한 이러한 柳馨遠의 인식은 均田制적인 그의 농업개혁론이 그러하듯이 三代의 古法·古制를 치밀하게 연구하는 가운데 얻어진 것이었다.(6) 그가 파악하는 三代社會는 井田制의 실시를 바탕으로 모든 생산계층에게 균등하게 토지가 분배되어 恒産이 가능한 사회였을 뿐만 아니라 商品流通經濟가 활발히 전개되는 사회였다. 즉 그는 『周禮』에서 보이는 外府(天官)·泉府(地官)·司市(地官)제도를,

> 司市는 次敍로써 지역을 나누어 市場을 經營하고, 가게를 열어 物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시장을 고루 다스리며, 政令으로써 물건이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을 禁하여 均布하였고, 商賈로 하여금 貨幣를 성하게 하여 널리 行布하도록 하였으며, 나라에 凶年이나 질병이 돌면 市場에는 세금을 없애 作布하였다.(7)

라고 하여 물화의 유통을 편리하게 하는 제반 조치 즉 市場, 貨幣, 商賈의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 聖人이 이미 井田制를 만들어 민생을 보존하고 都市의 廛肆에 토지를 분급하는 제도를 정함이 더욱 상세하니, 이것이 곧 四民이 각각 그 힘쓸 바를 얻으며 천하의 事功이 날로 흥하되 폐기되지 않는 所以이다.(8)

---

(5) 務本補末論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拙稿, 1996, 「16世紀 末~17世紀 初 商業觀의 變化와 商業政策論」『國史館論叢』 68.

(6) 이와 같은 柳馨遠의 학문태도는 주자학의 학문체계, 정치사회운영론에 대한 비판 및 극복의 학문과정으로서 許穆·尹鑴 등으로 대표되는 近畿南人 일반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당시 전개된 近畿南人의 變法論은 원시유교, 한당유학, 혹은 비유교 사상과 연결되는 가운데 西人=老論의 주자성리학에 바탕을 둔 地主 中心의 사회운영논리와 대립되는 새로운 체계로 현실 극복의 논리로서 마련된 것이었다. 이 시기 近畿南人의 학문·사상과 정치사회운영론에 대해서는 金駿錫, 앞의 책 ; 鄭豪薰, 1995, 「尹鑴의 經學思想과 國家權力強化論」『韓國史研究』 89집 참조.

(7)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司市 以次分地而經市 以陳肆辨物而平市 以政令禁物靡而均布 以商賈阜貨而行布 國凶荒扎喪 則市無征而作布

라고 하여, 聖人들이 井田制를 시행한 후 다시 국가의 재정운영, 貨幣 및 상품유통을 관장하는 이 같은 官府를 설치하여 상세함을 더한 점을 칭송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성인이 이 같은 관청을 설치하여 貨幣를 발행하고, 商賈를 관장하게 하는 이유를 井田制를 시행하여 民에게 恒産을 보장한 데 더하여 貨幣製造와 시장의 설치를 통해 상품유통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흉년이나 전염병이 돌아도 상품유통을 통해 民生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9)

이상과 같이 유형원이 파악하고 있는 三代社會는 단순히 閉鎖的이고 自給自足的인 자연경제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井田制 시행을 통한 恒産을 바탕으로 상품유통경제가 발달한 사회였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각각이 생산한 물품은 貨幣를 매개로 상고들에 의해 막힘없이 유통되어 民의 생활이 향상되고, 國富가 증진되고 있는 사회였던 것이다.

한편 柳馨遠은 이러한 三代社會의 상품유통경제 발달이 철저한 四民分業에 입각한 사회분업체제의 확립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이 사회는 井田制의 시행을 전제로 철저한 사회적 분업체제가 확립되어 "四民이 '各得其所'함으로써 事功이 날로 興하고 廢하지 않는 사회"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周禮』에서 보이는 外府(天官)·泉府(地官)·司市(地官)제도를 농업은 물론 상공업이 각각의 역할을 다하게 함으로써 민의 恒産과 國富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三代社會 四民分業에 대한 이해방식은, 四民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분업체제를 통해 신분·계급적인 질서를 공고화하는 논리로 전개

(8)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聖人 旣爲之井天下之田 以尊民生 於其都市廛肆 分田定制 尤爲詳盡如此 此所以四民各得其所 而天下事功 日興而不廢也

(9)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錢所以權百物 而流通之者 商賈也 故商賈阜 盛貨賄以後 錢布得行 若夫凶扎之際 食貨阜通 亦得以濟民之乏矣 故於是市無征 所以緩民生而來商賈也 又慮貨易之具不足 而民無以博食 故爲之鑄銅作錢 蓋米穀有豐歉 非人力所能 致金銅 則無豐歉可以人力爲之也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柳馨遠은 이러한 四民分業論을 末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 (한 사람이) 두 가지의 職業을 兼하는 것은 禁止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法으로만 禁止하려고 하면 아무리 嚴罰로 禁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田制가 실시되고 학교의 교육이 정비 발전되면, 士農工商의 모든 백성들이 자연히 일정한 職業에 固着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職業을 갖게 하고 그들을 침해하지 말아서 모두 편안히 살게만 해 준다면,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의 職業을 즐겨서 盡力하게 되고, 그 職業을 대대로 전수해 가면서 바꾸지 않을 것이다.(10)

라고 하여 四民分業의 전제로 均田制 시행과 학교교육을 통한 기술보급 및 民에 대한 침해의 방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가 이루어진 이후 전개되는 四民分業은 士農工商에 있어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모든 世業은 각각의 중요성을 지니게 되어 지금까지 末業으로 천시되었던 商·工人도 士·農과 마찬가지의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일정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의 신분제에 관한 개혁론이 선천적인 혈연을 기반으로 한 世襲制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능력을 통한 後天的인 획득 신분제로의 개편이라는 점(11)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앞에서 그가 "商人이나 匠人은 직종으로 보아서 士·農과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三代社會에 대한 柳馨遠의 이해 방식은 그의 경제문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일반 유학자들과 다른 차원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일반 유학자들은 흔히 경제문제를 농경에 기초한 衣食문제의 해결에 한정하여, 이를 '農桑'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반하여 柳馨遠은 국가의 경제·재정을 총칭하는 의미로 '食貨'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12) 그런데 그가 사용하는 食貨의 내용은,

(10) 『磻溪隨錄』 卷 1, 田制 上.
(11) 金駿錫, 1990, 앞의 글, 188~192면.
(12) 金駿錫, 1990, 앞의 글, 169~170면.

洪範의 八政을 살피면 첫째가 食이요 둘째가 貨이니, 食은 農田의 穀粟과 같은 먹을 수 있는 것이요 貨는 金刀錢貝와 같은 것이니 利를 펼치고 재물을 통하게 하는 소이이다. 양자는 생민의 근본이다.(13)

라고 하여 농업생산물인 穀粟과 布利通財하는 金刀錢貝 등과 같은 貨幣를 지칭하고 있다. 이는 그가 경제문제를 단순히 衣食문제의 해결이란 좁은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이라는 보다 광범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점은 柳馨遠이 인간의 경제활동이 단순히 필요한 물화의 생산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有無相通·以有易無하는 과정, 즉 각자의 생산물을 막힘 없이 유통시킴으로써 경제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원래 모든 物貨의 용도나 가치는 시간, 장소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물화로 하여금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그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物貨의 소유자 상호간에 행해지는 交易行爲, 즉 상품유통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건과 물건을 서로 교역함으로써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 있지만, 모든 물화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보편적인 價値尺度의 수단이 존재할 때 유통이 활발해져 민간의 소비생활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柳馨遠이 특히 貨幣의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14) 결국 柳馨遠에게 있어서 상품유통경제의 적절한 발전은 토지개혁에 의한 均田을 통하여 민생의 恒産 및 均産을 보장해 주는 보충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商業·商品流通經濟에 관한 柳馨遠의 입장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그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의 운영방식은 상품유통경제의 일정한 발전을 염두에 두고 구상되고 있었다. 이러한 柳馨遠의 구상은 첫째, 그가 井田制의 이념에 입각하여 현실의 토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으로 제

(13)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按洪範八政 一曰食 二曰貨 食爲農田穀粟可食之物 貨爲金刀錢貝之屬 所以布利通財者也 二者生民之本

(14) 柳馨遠의 貨幣觀에 대해서는 4장 2절에서 후술 함.

시한 均田的인 土地分給制[15]의 시행방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均田制 하에서 토지분급을 시행할 때, 현실적으로 토지의 종목을 균일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이다. 磻溪는 이러한 상황이 농민의 均産과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농업생산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或者가 "어떤 사람은 논만 있고 밭을 갖지 못한 경우, 日常生活에 필요한 각종 必需品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16]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 지금 南方 山 고을 백성은 대개 밭만 경작하고 있지만, 김제의 동진평과 여산의 채운향 등지에서는 전부 논만 있고 밭은 없다. 이것은 인민들이 자연의 조건에 의하여 각각 밭이나 논을 경작하고 서로 有無相通하여 보충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방보다 쓸 것을 못 쓰고 물건이 없어서 窘塞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17]

라고 하여 均田制 하의 土地分給이 농민들이 각자의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는 가운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구상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의 均田制論은 토지개혁을 통하여 民의 恒産을 보장하고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발전에 상응하는 상품유통의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전체 民産, 國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토지에 부과되는 田稅에서는 米와 錢을 參用하여 거두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御需를 비롯한 모든 費用과 官吏·軍士들의 祿俸지불에 있어서도 米·錢을 參用하여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18] 이는 국가의 재정운영을 통하여 貨幣流通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제안된 방안이지만, 이러한 재정운영을 담보할 만한 상품유통의 발달이 전제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는 방안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타의 산업에 부과되는 常稅의 수취물은

(15) 유형원의 토지제도 개혁론에 관해서는 金駿錫, 앞의 글 133~149면 참조.
(16) 『磻溪隨錄』 卷 2, 田制 下.
(17) 『磻溪隨錄』 卷 2, 田制 下.
(18) 『磻溪隨錄』 卷 4, 田制後錄 下.
一 凡收田稅 皆米錢參收(二分米 一分錢 其作布處 亦二分布 一分錢) 御需以下百官吏隷軍士祿俸及凡百支費 亦米錢參支(二分米 一分錢 然初行時 遠方或未周布 初頭則定以十分一 或五分一 待漸次錢足均布 然後定收三分一 於事爲適也)

전액을 현물이 아닌 綿布나 銅錢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9) 이렇게 현물이 아닌 綿布나 동전으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이유는 "해마다 得失이 다르기 때문에 稅를 布나 貨幣로 받아야 그 값의 高下에 따라서 稅가 균등하게 되기 때문"(20)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生産이 부족하면 값이 오르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값이 내리게 되는데 만일 현물로 세금을 받으면 매년 일정량을 거둔다 해도 해마다 책정되는 세금액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함이었다.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부과하는 常稅 역시 이들이 생산하는 물품의 상품화를 전제로 구상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국가관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적절한 가격을 주고 市場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가의 모든 경비는 일체 경상의 세입으로 지불하고 기타 다른 附課稅는 모두 폐지하도록 하며, 모든 經費의 지불은 綿·布·錢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은 종래의 現物의 직접적인 수취와 소비로 이루어지던 국가재정 운영 방식을 시장, 즉 商品流通經濟를 매개로 한 需用品 購入體制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넷째, 상품유통을 염두에 둔 賑恤制度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 만일 흉년이 들거나 병이 돌 때, 食糧과 物貨가 興盛하게 流通되면 백성의 窮乏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市場에서 稅를 받지 않는 것은 民生을 편안히 하고 商賈를 오게 하려는 것이다.(21)

라고 하여 상업발달이 賑恤을 위한 좋은 방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가 還上의 분급을 폐지하고 都城과 각 고을에 常平倉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마련한 새로운 진휼

(19) 『磻溪隨錄』 卷 2, 田制 下.
各色工匠, 坐賈, 行商에게 常稅로 매년 면포 1匹을, 鐵(鍮)冶匠은 冶의 크기에 따라 1~2匹, 선박은 大小廣狹에 따라 1~6匹, 漁箭은 9等級으로 나누어 2~18匹, 漁場은 漁箭과 마찬가지로 9等級으로 나누어 2~18匹, 鹽盆은 3等級으로 나누어 2~4匹을 거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磻溪隨錄』 卷 2, 田制 下.

(21)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방법이었다. 그는 당시의 還上制度를 王安石의 青苗法과 다름이 없는 제도로서 이익은 적고 해가 매우 커서 농민들이 원망하고 못살게 된 원인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還上는 糶糴의 본뜻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의 의미를 살려 常平制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22) 결국 상평제도는 高利貸化한 還上의 폐단을 개혁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賑恤 기능을 국가의 상품매매에 의한 物價調節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룩하려고 하는 발상인 것이다. 이처럼 柳馨遠이 구상하는 모든 경제제도 개혁은 상품유통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문제였으므로, 개혁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상공업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런데 柳馨遠이 파악하고 있는 상업의 현실은 결코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현실에서의 상업은 "習俗이 頹廢하고 물화가 유통되지 못하므로 興行하지 않는 것을 걱정할"(23) 단계였다. 유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상업진흥을 위한 제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3. 商業振興論과 그 內容

柳馨遠은 상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상품유통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업에 종사하는 專門商人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유형원의 四民分業論이 각각의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당연한 것이

(22) 『磻溪隨錄』 卷 3, 田制後錄 上 常平社倉.
"糶와 糴의 글자의 뜻은 본래 賣買한다는 말로서 쌀을 팔아 물건을 사는 것을 糶라하고, 물건을 팔아 쌀을 사는 것을 糴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還上米를 대여하는 것을 糶라 하고 還上米를 받아들이는 것을 糴이라고 하여 본래 글자의 本意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바, 이것은 습속이 고루한 소견에 젖었기 때문이다"라고 還上와 糶糴을 구분하여 常平制가 곧 糶糴임을 밝히고 있다.

(23) 『磻溪隨錄』 卷 1, 田制 上.

었다. 그가 제시한 전문상인의 육성방안은 전국적으로 常設鋪子를 설치하여 이를 상인들이 전업적으로 경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4) 첫째, 鋪子를 개설하는 지역은 都城의 部·坊이나 각 지방의 營·邑·鎭·驛·站은 물론 큰 마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都城의 경우 街路의 양편에 적당한 수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지방에는 州縣의 형세에 따라 3~4처 혹은 1~2처에 설치하게 되어 있다. 둘째, 鋪子의 종류에는 官設과 私設의 두 종류가 있는데, 官設鋪子는 착실하고 선량하여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택하되, 관청에서 쌀이나 곡식을 좋은 조건으로 대부하여 장사 밑천으로 삼게 하고, 기한을 넉넉하게 정해 시가에 따라 돈으로 환산하여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이 없는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도 손쉽게 鋪子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私設鋪子는 원하는 자가 스스로 설치하도록 하며, 자금의 대부를 원할 경우 官設鋪子와 같은 조건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지방에 설치되는 鋪子를 경영하는 자에게는 土地 1頃을 주고 保布를 면제하며, 일종의 영업세인 鋪稅(銅錢 240文=米 12斗)만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단 都城에 개설되는 鋪子는 토지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 鋪稅를 동전 120文으로 감하며, 私設鋪子의 경우 店鋪稅는 영구히 감하도록 하였다.(25) 넷째, 모든 鋪子의 건물은 기와집으로 짓게 하고, 마루나 廚房, 器皿類는 언제나 정결하게 할 것이며 집 앞에는 청색 깃발을 세워 표시로 삼으며 의자 탁자들을 일정한 규격에 의해 비치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鋪子와 官府와의 거래는 모두 시가에 따라 정당한 값을 주고받게 하며, 양반이나 서리들이 와서 作弊하거나 한 푼이라도 討索하면 곧 관에 고발하여 이를 엄중히 다스리도록 하는 禁斷事目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써서 鋪子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보호대책을 마련해 놓았다.(26)

이와 같은 常設鋪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流通機構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우선 都城에 설치되는 鋪子의 경우 기존의 市廛과 비교할

(24) 『磻溪隨錄』 卷 4, 田制後錄 下.
(25) 『磻溪隨錄』 卷 4, 田制後錄 下.
(26) 『磻溪隨錄』 卷 4, 田制後錄 下.

때, 그 성격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柳馨遠이 설치하고자 하는 鋪子는 그것이 都城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市廛과 같은 國役의 의무나 禁亂廛權과 같은 특권을 행사하는 封建的인 御用商人이 아니었다. 그가 都城에 설치하고자 하는 鋪子에는 官이 많은 특혜와 지원을 주고 있지만, 관청과의 관계는 정상적인 賣買를 바탕으로 한 상인과 고객 이상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당시 都城에서는 禁亂廛權의 행사를 바탕으로 市廛商人들이 小商人들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상황이었다. 그가 鋪子 설치를 원하는 자에게 官設鋪子와 동일한 조건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鋪稅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점은 소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專門商人인 鋪子商人들을 전국적인 규모로 육성하여 소수의 特權商人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상업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형원이 제시하고 있는 상업진흥을 위한 방안은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恒産이 가능하도록 재생산 기반을 보장함으로써, 안심하고 생업에 전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柳馨遠은 民의 恒産을 위한 治者의 임무는 "단지 田地의 경계를 바로잡아 貧富를 고르게 하고, 인구수를 밝혀서 賦役을 공평히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恒産을 누리고 각기 그 分限을 지키게 하는 일"(27)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입장에서 상공업 종사자들에게도 恒産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양의 土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50畝의 경작지를 주고 保布는 일반 경작농민의 반(綿布 1필)만 내도록 규정하였다.(28) 그런데 그는 상공인에게 耕地를 지급하는 이유를

> 지금 우리 나라의 匠人과 商人은 농민과 다름없이 농사를 지으므로 절반을 정한 것이다. 或者가 말하기를 "匠人과 商人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따로 또 耕地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하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 만약 都城과 같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라면 자기 직업으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지방에 사는

(27) 『磻溪隨錄』 卷 2, 田制 下
只是要正地界 明人數以均役 使之有恒産 各得其分耳
(28) 『磻溪隨錄』 卷 1, 田制 上.

자에게 전혀 경지를 주지 않는다면 工商業이 아주 없어지고 말 것이다.(29)

현 단계는 商工業 발달이 미흡하여 자신의 四民分業論에 입각한 각 직종의 專業化가 불가능한 단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상공업 수준은 적절한 보완책이 없을 경우 상공업 종사자가 사라질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정액의 토지를 지급하여 생계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아마도 상공업 종사자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방안은 상공업 농업과 균형을 이룰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여 상공업자들의 전업화가 가능할 때까지 취해지는 한시적인 수단이었을 것이다.

柳馨遠은 상업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조치로서 상품생산이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무절제한 수탈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당시 상품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官廳이나 權勢家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절제한 收奪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았다. 그는 농촌에서 각종 과일나무나 제품생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어 農外所得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전제로 관청의 모든 需用을 시장에서 구입해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농촌에서 과일나무나 각종 제품생산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심지 않는 것은 관청이 이를 핑계로 많은 양의 과일이나 원료를 督責하며, 설혹 그 나무가 없어지더라도 계속 수탈하여 마침내 賦稅化함으로써 괴로움을 이기기 어려운 까닭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民間에서는 과일나무를 심기는 커녕 서로 심지 말도록 권하고, 혹시 저절로 나더라도 수탈이 무서워 뽑아버리는 사정이라는 것이다.(30)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商品生産과 관련된 商業的 農業의 활성화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백성들이 나무를 심어 대대로 전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官家가 大同法에 규정된 값을 지불하고 필요한 기름, 꿀, 과일 등의 産物을 市場에서 사다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雜稅의 폐지가 곧 농업에서의 商品生産을 증가시키는 방안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9) 『磻溪隨錄』 卷 1, 田制 上.
(30) 『磻溪隨錄』 田制後錄 上 栽植.

유형원의 이러한 생각은 匠人들에 대한 雜役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 지금 우리 나라에는 製造하는 물품이 精巧하지 못하고, 또 物貨가 不通하고 있으니 응당 稅를 가볍게 하여 장려해야 한다.(31)

라고 하여 手工業 발전과 商品流通經濟가 전반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장인들에게 부과되는 賦稅額를 낮추어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즉 당시 匠人들은 정해진 세금이 없이 관청이나 권세가들이 필요에 따라 강제로 데려다 일을 시키기 때문에 자기 기술이 남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국적으로 만연되면서 기술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제품이 粗雜해져 手工業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장인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세금만을 부과하고(32) 精巧한 技術을 필요로 하는 귀중한 물품을 만드는 장인들에게는 오히려 稅를 감해 주어 장려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柳馨遠이 장인들에 대한 稅額을 매년 綿布 1필=120文이라는 낮은 수준으로 규정한 것은 바로 장인들의 技術向上에 의한 상품생산의 확대라는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도 적정 수준의 常稅가 책정될 필요가 있었다. 당시 漁箭, 漁場이나 鹽盆, 鐵(鍮)冶, 船舶에 대해서도 수탈은 거의 무제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당시 대부분의 漁場이나 鹽盆 등은 宮家, 貴族 및 中央衙門에 분점되어 있어 제각기 사람을 보내어 수시로 징수할 뿐만 아니라, 本道와 本邑 또한 별도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예컨대 船人들이 고기를 잡으려 하면 바다마다 漁場稅라는 명목으로 징세가 이루어지고, 조기를 잡으면 조기세를 받고, 靑魚를 잡으면 청어세를 받고, 民魚·眞魚·蘇魚·새우젓에 이르기까지 고기를 잡는 곳마다 現物이나 혹은 米·布로 세금을 받아 한 번 바치는 것만 하여도 常布 두어 同 이상씩 되는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선인들은

(31) 『磻溪隨錄』 卷 1, 田制 上.
(32) 匠人稅는 매년 綿布 1匹=동전 120文으로 규정하고 있다.

잡은 것을 다 빼앗겨 남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은 꾸어서까지 바치게 된다는 것이다.(33) 그리고 아무런 대소의 기준 없이 漁場 하나에 6升綿布로 적어도 5~6疋에서 많게는 6~7동(300필~350필)까지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34) 鹽盆 또한 마찬가지여서 扶安·茂長 등지에서는 매년 소금 8석이나 綿布 8匹(5升布)씩 받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잡세가 부과되어 이를 모두 합하면 17~18石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35) 이 때문에 沿海의 백성이나, 鹽盆을 경영하는 자들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해 遊離하게 되어 물가가 등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무절제한 수탈이 생산기반을 피폐화시켜 산업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柳馨遠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經稅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타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적정량의 常稅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各色工匠·座賈·行商·鐵(鍮)冶匠은 각기 매년 綿布 1필을 부과하고, 특히 상당한 이익이 있는 船隻(1~6필), 漁箭(2~18필), 漁場(2~18필), 鹽盆(2~4필) 등에는 그 利潤의 多寡를 헤아려 세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며,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잡세의 부과를 금하도록 하였다.(36) 이렇게 무절제한 수탈을 방지하여 여기에 종사하는 민들의 恒産을 보장해 주게 되면, 이들은 각각의 생업에 전념하게 되어 專業化가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의 확대와 기술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유통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품이 자유롭게 운반될 수 있도록 道路와 運搬手段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柳馨遠은 도성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로를 규격에 맞춰 정비하도록 하고 교량도 점차 石橋로 개작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37) 그는 특히 都城이나 邑

(33) 『磻溪隨錄』 卷 1, 田制 上.
(34) 『磻溪隨錄』 卷 1, 田制 上.
(35) 『磻溪隨錄』 卷 1, 田制 上.
(36) 『磻溪隨錄』, 卷 1, 田制 上.
(37) 都城의 內路는 大路는 넓이가 36步, 中路는 18步, 小路는 9步로 하여 길 양편에 모두 溝渠를 설치한다. 外方邑城의 內路는 大路 18步, 中路 9步, 小路 6步로 하며, 그밖의 모든 도로는 大路 12步, 中路 9步, 小路 6步로 하며, 모든 官路에는 10里마다 小堠를 세우고 三十里마다 大堠를 세워 거리 數와 方向을 새겨놓도록 하였다.

城을 관통하는 대로는 넓이가 18步에서 36步로 아주 넓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넓게 구획하는 이유는 도성과 각 邑城에 市廛을 설치해야 하고, 車馬와 많은 사람들이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8) 도로가 잘 정비될 경우, 물화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여행객이 많아져 자연히 상품유통이 활발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육지에서의 物貨輸送을 편리하게 하는 수레의 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장려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는 수레를 이용하는 습속이 없으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관청이 솔선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39) 그래서 모든 중앙과 지방관청에 大車를 두도록 하고 관청에서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에서는 田車를 제작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기 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레 소유자에게는 세를 받지 말도록 하며, 다만 都城에서 수레를 전업으로 하는 자는 그 수입을 참작하여 약간의 赴役(1년에 수 일)을 하도록 하였다.(40)

한편 柳馨遠은 船舶의 운행에 관해서도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船舶은 조선사회에서 물화를 운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柳馨遠은 船舶의 개량이나 제조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기존 船舶의 운행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즉 그는 모든 船舶의 大小에 따라 1년에 1필에서 6필까지의 本稅만을 받도록 하고 商船이 정박하는 곳마다 부과하는 土稅나 기타 잡세의 징수는 일체 금지하도록 하였다.(41) 그는 船舶에 대한 잡세의 징수가 일정한 규정이 없고 간활한 아전들의 손에 맡겨져 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선인들이 고통스럽고 漁業이 부진하며 상업이 쇠퇴하여 물가가 등귀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42) 따라서 각 浦口와 鎭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찰만 하도록 하고

(38) 『磻溪隨錄』 卷 25, 續篇 上.
(39) 『磻溪隨錄』 卷 25, 續篇 上.
按舟車之利 大矣 陸地所用 莫如車 我國雖土地不平 其平夷 可以用車處亦多 而俗望不知用 宜令自官始之使 民興行也
(40) 『磻溪隨錄』 卷 25, 續篇 上.
(41) 『磻溪隨錄』 卷 1, 田制 上.
(42) 『磻溪隨錄』 卷 1, 田制 上.

세금의 부과는 금지해서 船舶의 운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物貨의 流通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43)

이상과 같이 柳馨遠은 당시의 상품유통경제가 本業인 農業의 발전정도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전제 하에, 商工業이 농업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商業政策이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4. '利權在上論'的 商業政策論

1) 國家 管理下의 流通機構 建設

柳馨遠은 常設鋪子를 지방 통치조직과 긴밀하게 연관시킴으로써 지방의 상품유통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柳馨遠이 활동하던 17세기 농촌사회에는 상업적 농업의 성장을 배경으로 농민적 상품유통 기구로서의 場市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농촌사회 각 계층의 상업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농민 및 富農層에 의해 생산된 각종 상품작물, 지주층의 地代收取物도 이를 통하여 상품화되고 있었다. 柳馨遠은 농촌사회의 물화유통을 위한 場市의 긍정적인 기능은 인정하였지만, 그것은 利益에 비하여 害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場市에서의 상품유통이 그가 구상하는 四民分業에 입각한 專業化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外方 場市를 단지 촌민들이 서로 모여 교역하고 흩어지는 곳으로서 전업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常設鋪子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44) 즉 場市는

> 場市가 鋪子나 廛肆에 비하여 같은 상업이면서도 그 利害가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정해진 業이 없고 또 官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각 방면에서

(43) 『磻溪隨錄』 卷 1, 田制 上.

(44) 『磻溪隨錄』 卷 4, 田制後錄 下.
外方五日一開場市 只是村民相聚交易而退耳 與都中市廛常居 專業爲利者 事體有異

모여드는 자가 대개 無賴輩들이며, 이들이 술주정과 싸움질을 아무 거리낌없이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곳에는 장사에 전념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부랑스러운 짓을 일삼는 자가 태반이다.(45)

라고 하여 專業이 가능한 鋪子·廛肆에 비하여 場市는 일정한 業이 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 그의 인식이었다. 철저한 四民分業을 바탕으로 한 農·工·商의 專業化를 통해 각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구상하고 있는 유형원의 입장에서 볼 때, 場市는 農·商이 뒤섞여서 사람이 일정한 業이 없게 만들어 오히려 상업발전에 장애가 되는 셈이었다.(46) 따라서 유형원은 특히 지방에 설치되는 常設鋪子에는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田 1頃을 주고 保布를 면제하여 상업발달이 미숙한 상황에서도 專業的인 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상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었다.

둘째, 場市는 관청의 적절한 관리에서 벗어나 농민수탈의 場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백성을 빈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파악에서였다. 당시 場市는 관에서 場市稅를 부과하여 物貨를 거두어들이고 吏胥들이 이를 기화로 작폐함으로써, 이 곳을 이용하는 힘없는 농민들을 수탈하는 장이 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관가 근처를 피하여 場市가 개설되어 오히려 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空場(場市)이 더욱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47) 이렇게 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場市가 늘어나는 현상은 국가의 상품유통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여 적절한 상품유통의 발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對民統制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柳馨遠이 場市를 "屠殺을 기탄없이 하고, 무리를 지어 술 마시는 일이 節制

(45) 『磻溪隨錄』 卷 4, 田制後錄 下.

(46) 『磻溪隨錄』 卷 1, 田制 上.

(47) 『磻溪隨錄』 卷 4, 田制後錄 下.
各州縣邑內外 凡外處空場 斷罷之(唯各鎭各驛及當路驛站之距 各邑三十里外者亦許開場市 其餘空場 一切罷之) … 凡場市 自官勿徵場稅 痛革從前弊習(本國地瘠民稀 物產不集 況外方五日一開場市 只是村民相聚交易而退耳 與都中市廛常居專業爲利者 事體有異 但當禁其酗鬪奸亂之人爾 豈可征其交易之民 今州縣例多出定官吏 稱以場稅 攬收場市百物 以入官中事 極無理 官家若此 吏輩何所不至 宜痛禁場稅 凡從前官吏作弊之習 一切禁斷 近來空場之尤多者 亦緣厭避官家近處故也

가 없어서 良風美俗을 해치며, 도둑을 길러 내는 곳"이 되고 있다고 본 것은 이 때문이었다. 결국 柳馨遠은 농촌 場市를 혁파하고 관청의 적절한 통제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관청소재지나 站店境 내에 常設鋪子를 설치하여 상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농민은 물론 상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流通機構를 구상하여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 중 站店境에 설치되는 鋪子는 당시 산곡간에까지 확대되고 있던 지방 場市를 대신하여 지방상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하는 계획 하에 설치된 것이었다. 站店(속칭 주막)은 조선전기에 설치되었던 院을 대신하여, 대로변을 따라 매 30리 혹은 15리에 하나씩 설치된 일종의 숙박시설로 站店이 설치되는 구역을 站店境이라 한다. 이 站店境에는 여행객의 숙박을 위한 店肆가 설치되어 있어, 大小公私 여행객의 숙박과 荒唐人의 機察, 急行使命 및 驛卒의 起着, 交替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柳馨遠은 이러한 站店境 내에 常設鋪子를 설치하여 場市를 대신할 수 있는 지방상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站店境의 구조[48]를 살펴보면, 그 규모는 도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大路에는 40頃, 中路에는 30頃, 小路에는 20頃으로 규정하고, 특별히 중국과의 사신행렬이 내왕하는 西直路에는 80頃, 일본과의 使臣행렬이 왕래하는 東萊直路에는 40頃의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거주하는 戶數는 1頃當 20戶를 기준으로 店肆와 鋪子를 설치하고 사방으로 길을 내어 정연한 市街地 형태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站店의 주변은 모두 담으로 둘러싸서 城郭都市와 같은 형태를 갖추도록 하였다. 站店에 거주하는 店肆나 鋪子에는 각각 1頃의 토지를 주고 保布를 면제하며 다만 戶錢 40文을 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로 站店境 내에 店肆를 설치하는 자는 3년 동안 戶稅를 면제하고, 鋪子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5년 동안 店鋪稅를 면제해 주어 숙박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특히 관청소재지인 邑內가 거리상으로 보아 站店 설치지역이 될 경우, 지방관청이 소재한 邑內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鋪子는 站店境 내에 倂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지방에 설치되는 官設鋪子는 대부분 站

(48) 『磻溪隨錄』 卷1, 田制 上.

店境 내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站店境은 지방상인들의 집단거주지이자 지방 상품유통경제의 중심이 되어 일종의 商業都市로 성장할 수 있는 展望을 갖도록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柳馨遠이 이처럼 站店境을 지방상업, 상품유통의 중심이 되도록 육성하려 한 것은 집권체제하의 중앙과 지방의 政治, 行政의 연결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站店의 기능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즉 站店은 都城을 頂点으로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政治·行政網이라 할 수 있다.(49) 柳馨遠은 이러한 站店에 상품유통기구로서의 기능을 더함으로써 기존의 전국적인 정치·행정망을 바탕으로 都城을 頂点으로 하는 전국적인 상품유통망을 형성함으로써, 集權的인 國家體制에 걸맞는 都城集中的 상품유통체제의 형성을 構想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구상은 16세기 이래 성행하고 있던 防納流通機構를 국가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貿備主人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貿備主人은 大同法 실시하의 貢人과 같이 관청에 소요되는 물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御用商人이었다. 柳馨遠은 貿備主人이 물품을 구입하는 장소 및 그 방식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가함으로써 그가 구상하고 있는 상품유통체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50)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관청이 필요로 하는 물품은 지방에 分定하지 말고 그 관청의 소재지, 즉 중앙관청은 都城, 감영은 감영의 소재지에서 사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51) 이를 위해 각 관청에는 貿備主人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들에게는 經常稅로 거두어들인 米·布·錢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일반 物價보다 倍, 혹은 여러 배의 액수가 되도록 貢價를 넉넉히 지급하여 풍년이나 흉년을 물론하고 영구히 값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貿備主人들로 하여금 물품의 값이 일정한 법이 있음을 알게 하여 미리 주선해 물건을 비축하여 스스로 이익을 얻고, 관청의 納品에도 결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49) 金駿錫, 앞의 글, 179면.
(50) 『磻溪隨錄』 卷 3, 田制後錄 上 經費.
(51) 『磻溪隨錄』 卷 3, 田制後錄 上 經費.

둘째, 만일 먼 지방에서 産出되는 물건이어서 都城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먼저 都城에서 지급해야 할 값을 정하고, 물건이 생산되는 고을의 上納稅에서 물건 값에 해당하는 액수를 떼어 두고, 그 고을에서 특정인을 貿備主人으로 정하여 중앙관사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당연히 지방관청의 貿備主人도 都城의 貿備主人과 마찬가지로 豊凶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52) 이렇게 하면 그 고을 관청에서 물품 구입을 위해 직접 개입하지 않게 되어 관에 의한 抑買가 사라지고 和買가 이루어지게 되어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관청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구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할 경우, 貿備主人들의 활동을 통하여 都城과 지방사이에 상품유통이 활발해질 것이 기대될 수 있다. 柳馨遠은 실제로 이점에 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즉 그는 "우리 나라는 중국과 달라서 物貨가 유통되지 않아 都城에서만 사게 되면 그 값을 넉넉히 주더라도 물화가 모여들지 않아 관청의 需用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53) 라고 자문한 후,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 모든 물건을 都城에서 사지 아니한 지 오래니 만일 이 制度를 設行하는 처음에는 혹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나 2, 3년을 지나지 아니하여 疑惑하는 附言이 점차 없어지고 都城과 外方의 물화가 통하는 길이 크게 열려서 유행될 것이다. 종전에 物貨가 통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그 값을 주고 사서 쓰지 않은 까닭이다. 우리 나라는 道路의 교통이 막히고 좁아서 중국과 같지 아니하나 사람이 이익을 따르고 損害를 피하고자 하는 人情은 천하가 동일한 것이니, 이미 그 값을 넉넉하게 정하면 利益이 있는 곳에 사람이 반드시 달려가는 것으로 비록 禁止하고자 하더라도 또한 불가능 한 것이다.(54)

라고 하여 상품유통이 발달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유형원이 제시한 이러한 방식은 集權的 國家體制 內에서 전개되는 중앙중심, 즉 都城 集中的 상품유통체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柳成龍의 罷貢收米論에서 나타났듯이 集權的인 國家體制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상품유통체제 또한 租稅收取와 마찬

(52) 『磻溪隨錄』 卷 3, 田制後錄 上 經費.
(53) 『磻溪隨錄』 卷 3, 田制後錄 上 經費.
(54) 『磻溪隨錄』 卷 3, 田制後錄 上 經費.

가지로 중앙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는 것이었고, 이는 都城을 정점으로 한 전국적인 상품유통체제의 확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유형원이 중앙관청이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을 都城으로 한정하고 이를 통해 都城으로 상품이 집중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가 구상하고 있는 集權的인 國家體制의 物的基盤 형성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55) 마찬가지로 監營所在地와 各邑, 各邑과 鄕村 사이에 상품유통이 활발해져 감영소재지를 정점으로 하는 지방단위의 지역유통망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貿備主人의 설치는 당시 성장하고 있던 私商, 특히 富商大賈層을 국가의 관리체제하에 편입하기 위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관청수요를 둘러싼 상품유통망과 站店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유통망이 결합될 경우 여기서 나타나는 상품유통체계는 지방 관청소재지나 站店이 상업도시로 성장하여 그 지역 상품유통의 거점이 되고, 다시 都城을 頂点으로 全國을 하나의 통일된 유통망으로 연결하는 전국적 상품유통체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商品流通網, 流通機構는 공적인 지방통치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다. 만일 기존의 관료제나 지방통치조직이 신분제에 입각한 封建的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상품유통경제의 발전에 따른 이익은 모두 兩班地主層에 의해 독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柳馨遠의 이러한 상품유통기구, 유통망의 건설은 기존 官僚制, 地方統治制度의 근본적인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柳馨遠이 구상하는 集權的인 官僚體制는 새로운 관료선발방식인 公擧制를 통해 世襲門閥의 특권을 제한하고 人品과 能力本位의 관리선발을 보장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층, 관인층이 주도하는 사회 정치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56) 그리고 守令權의 강화와 향촌

(55) 『磻溪隨錄』 卷 3, 田制後錄 上 經費.
柳馨遠의 이러한 재정운영 방식은 貢納制에서 파생된 防納의 폐단을 깊이 연구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논자들, 즉 李浚慶, 李珥, 柳成龍, 韓百謙, 李元翼, 金堉 등의 貢納制 弊端에 대한 變通論을 두루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특히 도성집중적 유통경제체제 형성을 위해 중앙관청의 需用品 구입을 都城로 한정하는 방식은 柳成龍, 韓百謙의 '罷貢作米 自京貿用'의 견해를 주목하여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6) 金駿錫, 1990, 앞의 글 참조.

사회의 제도적인 개편(鄕里制)을 통하여 기존 양반지주층의 자율적인 향촌통치기구인 鄕約, 鄕會 등을 공적인 통치권 내로 편입시켜 재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57) 따라서 국가의 公的인 지방통치체제를 통하여 상품유통기구를 관리하고 中央을 頂点으로 하는 관료체제와 연결시키는 새로운 流通機構를 창출한다고 할 때, 상품유통의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의 分配形態는 이전과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기존의 상품유통구조를 장악하여 유통이윤을 거의 독점하고 있던 종래의 양반지주층은 그 독점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貨幣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게 될 경우 상품유통의 이윤은 대부분 상품생산자인 농민과 유통기구를 관리하는 국가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상품유통기구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상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가 관리체제를 형성하고자 했던 柳馨遠의 구상은 貨幣政策論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2) 貨權在上論的 銅錢鑄造 · 流通論

柳馨遠의 貨幣觀(58) 또한 商業觀과 마찬가지로 三代 이상사회의 貨幣제도와 역대 중국과 우리 나라의 貨幣制度 및 流通政策을 고찰하여 나름대로의 통화원리와 의의를 정리하여 확립한 것이었다.(59)

柳馨遠은 상품유통에 있어서 貨幣의 역할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파악하였다. 첫째, '所以權百物'(60)이라고 표현하였듯이 보편적인 가치척도의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로 보았다. 물론 생산자 상호간에 물건과 물건을 직접 交易함으로써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상품의 가

(57) 吳永敎, 1992, 앞의 글 참조.

(58) 유형원의 화폐관에 대해서는 元裕漢, 1971, 「磻溪 柳馨遠의 肯定的 貨幣論」 『柳洪烈敎授華甲紀念論叢』; 권영익, 1976, 「柳馨遠의 貨幣思想에 관한 硏究 —화폐의 관리적 및 실천적 사고를 중심으로—」 『大同文化硏究』 11 등 기존 연구가 참조된다.

(59) 柳馨遠의 화폐정책에 관해서는 金駿錫, 앞의 글, 162~181면에서 이미 적절한 분석이 가해지고 있다. 본고의 작성에서 화폐문제에 관해서는 이 논문에 힘입은 바가 크다.

(60)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치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척도의 수단이 없을 경우 교역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그는 화폐의 역할을 '日中爲市 使民交易 以通有無 以物易物 物不皆有 故有錢幣之造焉'(61)이라고 하여 교환수단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物物交換만으로는 적절한 교환조건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貨幣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째, 柳馨遠은 貨幣의 역할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 대개 天下의 百貨는 貨幣에 의지하여 유통하는 것이다. 무거워서 들 수 없는 것은 貨幣가 아니면 멀리 도달할 수 없고, 막혀서 통하지 못하는 물건은 貨幣가 아니면 兼濟할 수 없으며, 큰 것은 貨幣가 아니면 적게 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62)

라고 하여, 貨幣는 물화가 갖는 유통상의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유통을 편리하게 하며, 그 용도를 확대,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유형원에게 있어서 貨幣는 '握之非有補於溫飽也 捨之非有切於飢寒也'(63)한 無用의 器物이지만, 샘물이 灌漑를 통해 농업에서의 항산을 가능케 하듯이, 상품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서 생산자 상호간의 결핍이 해소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용을 넉넉하게 하고 민생을 여유롭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64) 이러한 인식은 柳馨遠이 상품유통경제의 발전에 있어 貨幣의 역할을 핵심적인 문제로 파악하게 하는 출발점인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그는 貨幣政策의 기본원리와 意義를 고대 중국의 治水事業에서부터 찾고 있었다.

---

(61)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62)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蓋天下百貨 皆資於錢以流通 重者不可擧 非錢不能以致遠 滯者不能通 非錢不得以兼濟 大者不可分 非錢不得以小用.

(63)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64)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按錢貨 所以贍國用 而裕民生 有國之 必可行者也

대저 물은 天下를 쉬이 흐르는 존재이나, 도랑을 만들지 않고는 끝내 灌漑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하루 아침에 도랑을 통하여 물을 끌어 들인다면 가득 흐르게 될 것이다. 錢貨의 흐름도 이와 어찌 다르겠는가? 진정 (貨幣流通의) 조건을 만들지 않는다면 中國이라도 능히 유통되지 않을 것이요 과연 이를 한다면 천하에 (錢貨가) 유통되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65)

물의 흐름을 灌漑事業을 통해서 조절해 주듯이 錢貨의 유통도 이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국가가 치수사업을 행하듯이 인내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治水·灌漑事業은 일찍부터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군주의 기본 임무이며 통치수단이 되어 왔다. 柳馨遠은 화폐유통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가 책임지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즉 치수·관개사업이 흉년을 예방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면, 貨幣유통은 생산된 물화를 均布하여 이미 발생한 災難을 구하는 수단(66)이 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원리가 동일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柳馨遠은 貨幣의 주조와 유통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군주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즉

銅錢이란 無用의 器物이지만 富貴를 바꿀 수 있다. 富貴란 人主가 장악하는 權柄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鑄錢 ; 필자주) 한다면 이는 人主와 더불어 함께 權柄을 쥐게 되는 것이니 권장할 만하지 못하다.(67)

라고 하여 富貴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중요한 利權인 貨幣의 주조·유통권을 君主의 操柄이라고 강조한 점이 그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유형원의 貨幣論은 철저한 貨權在上論에 입각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5)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夫水天下易流之物也 不開渠而欲其漑也 則終不可得 苟一朝開其渠以導之 則沛然流矣 錢貨之行也 亦何異於是 苟此之不爲 雖中國 必不能行 果此之爲 天下無不可行之國矣

(66)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若夫凶扎之際 食貨阜通 亦得以濟民之乏矣 故於是 市無征 所以緩民生而來商賈也 又慮貨易之具不足 而民無以博食 故爲之鑄銅作錢 蓋米穀有豊歉 非人力所能致金銅 則無豊歉 可以人力爲之也

(67)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錢者 無用器也 而可以易富貴 富貴者 人主之操柄也 令民爲之 是與人主共操柄 不可長也

유형원이 주장하는 貨權在上論은 조선전기 이래 지배층들이 銅錢이나 楮貨와 같은 화폐를 유통시키면서 주장했던 수탈적인 貨權在上論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68) 그의 貨權在上論은 이와 반대로 철저하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즉

> 대저 上天이 군주를 세워 生民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대개 天下의 利를 管掌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천하의 利益을 獨占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69)

여기에서 하늘이 君主에게 이권을 장악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유형원은 군주에게 輕重을 조절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천하의 백성을 편하게 하라는 것, 다시 말해 개인으로서의 군주의 私益에 바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했다.

> 하늘이 萬物을 낳아 사람을 기름에 人君에게 利權을 부여한 것은 그 輕重을 헤아려 天下人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인의 사사로운 奉養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군주가 능히 그 輕重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物貨가 두루 폐기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70)

柳馨遠은 湯과 禹와 같은 중국의 聖王들이 화폐를 주조하여 민생의 곤궁을 구하였듯이, 화폐의 주조와 유통 등 통화관리 일체를 군주가 공적으로 장악하여 왕도정치를 수행하는 방편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71) 즉 그에게 있어서 君主는 臣民의 위에 존재하여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天下之民에게 공통의 이익이 되게 하는 公的인 存在로 상정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민생의 안정과 부국을 위한 '利權在上論'과 君主論은 임

---

(68) 李鍾英, 1962, 「朝鮮初 貨幣制의 變遷」『人文科學』 7(연세대) ; 李鍾英, 1964, 「李朝人의 貨幣觀」『史學雜誌』 5(연세대) 참조.

(69)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夫上天立君 以爲生民之主 蓋以之掌天下之利 非以其專天下之利也

(70)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天生物以養人 付利權于人君 俾權其輕重 以便利天下之人 非用之以爲一人之私奉也 君不能權其輕重 致物貨之偏廢固

(71)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管仲曰 … 夫三幣 握之非有補於溫飽也 捨之非有切於飢寒也 先王以守財物以於人事 而平天下也

진왜란 직후 '務本補末論者'들의 상업정책론의 핵심사상이었다. 近畿南人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고, 國家再造의 方略으로서 君主權 強化論을 펴고 있는 유형원의 학문적 전통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그의 貨幣論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貨幣에 대한 이와 같은 그의 認識은 近畿南人들이 주장하는 '利權在上論'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柳馨遠의 貨幣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볼 때, 17세기 조선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貨幣流通이나 이를 위한 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되었다. 당시 조선사회 내에서는 대외무역 및 대규모의 상품유통에 銀貨가 일부 사용되고 있을 뿐, 농촌사회에서는 대부분 布나 米穀이 物品貨幣로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다. 특히 15세기 후반 이후 등장한 麤布가 地方場市에 널리 확산되어 실질적인 貨幣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72)

柳馨遠은 아무런 使用價値가 없는 麤布가 농촌사회의 상품유통경제에서 貨幣로 기능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동전유통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나라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비록 貨幣를 유통시키고자 하지만 마침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는 論者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土地와 農業, 人性이나 嗜好, 四民이 각각 그 생업을 통해 以有易無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 다름이 없다는 것,(73) 그리고 금일 농촌 場市에서 아무런 使用價値를 지니지 못한 麤布가 정부의 금지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통되는 사례를 볼 때, 동전이 한번 유통되기 시작하면 금지하고자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유통될 것(74)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麤布를 대신하여 동전이 유통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고 있었다. 즉

(72) 이에 관해서는 方基中, 1984, 「17·18세기 前半 金納租稅의 成立과 展開」『東方學志』 45 ; 李載允, 1996, 「18세기 貨幣經濟의 發展과 錢荒」『學林』 18 참고.

(73)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74)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以今麤布交易觀之 則不待他言而知錢之必行無疑矣 今麤布僅一二升 元不成布 自無所用 而貿遷相通 故禁之而不止 錢若一行 則雖欲禁止 亦不可得矣

麤布는 有用한 물건을 無用하게 만들며 銅錢은 無用한 물건을 有用하게 하는 것이다. 麤布는 사람의 工力을 많이 들인 것이지만 오래지 않아 닳아 못쓰게 되고 銅錢은 한번 만들어지면 萬歲토록 전할 수 있으니 그것들의 이로움과 해로움이 어떠한가?(75)

이처럼 麤布는 柳馨遠이 생각하고 있는 화폐, 즉 가치척도와 富의 축적 기능을 가진 존재로서의 화폐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실제로 당시 현실에서도 麤布의 한계가 점차 노정되고 있었다.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농촌시장에서 주된 화폐기능을 담당하던 麤布가 오히려 유통경제의 발달에 장애요인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전개된 봉건정부의 布納極大化와 상품유통경제의 발달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한 현상이었다. 즉 봉건정부의 布納擴大와 木品의 高等化로 야기된 良布收奪 강화는 麤布의 조세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봉쇄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촌사회 내부에서 麤布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 물가를 만성적으로 상승시켜 농민경제를 압박하고 있었다. 한편 麤布의 貨幣的 기능은 물품화폐로서 胎生的인 한계로 인해 상품유통경제의 발달에 반비례하여 그 유용성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었다. 즉 "布는 品質과 色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의로 값을 낮추고 높일 수 있어"(76) 交易에서 가치척도의 역할을 엄밀하게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상품의 거래규모가 커지고 그 빈도가 잦아질수록 交易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 농촌시장을 장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던 私商層의 입장에서 볼 때, 축적기능을 갖지 못한 麤布는 이들의 자본축적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성장에 반비례하여 유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축소당하고 있었다. 보다 보편적인 價値尺度와 資本蓄積의 수단이 될 수 있는 法定 鑄造貨幣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던 유형원은 상품유통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소재로 만들어진 안정된 가치를 지닌 화

(75)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下.
麤布 以有用之物 以爲無用 銅錢 以無用之物 以爲有用麤布多費人功 而未久耗破 銅錢一成 而萬世可傳 其利害爲如何哉

(76) 『孝宗實錄』 卷 6, 孝宗 2년 2월 壬申. 35책 470면.

폐의 供給과 流通을 시행하는 국가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우선 화폐는 재료에서부터 그 모양에 이르기까지 通用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될 필요가 있었다. 그는 銅錢을 최선의 화폐로 생각하였다. 역대에 사용된 鐵錢은 너무 무겁고, 楮貨와 같은 紙錢은 額面價와 素材價의 격차가 크고 쉽게 망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의 사용을 반대하였다.(77) 그는 동전의 원료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동전유통이 어렵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하여

> 혹 銅錫이 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므로 어렵다고 하나 이는 더욱 틀린 것이다.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더라도 貿易을 하면 그 가격이 심하게 높지는 않다. 따라서 深山窮谷에 초가집 짓고 사는 사람들도 술먹고 밥먹는 그릇 이외의 그릇은 구리를 사용하며 크고 작은 寺刹은 혹 한 현에 수십여 곳이나 되는데 한 절에서의 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물며 一國의 힘으로써 貿易을 한다면 錢貨를 만들기에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 國家에 구리 鑛山이 없으므로 백성 가운데 盜鑄하는 자가 적으니 이는 行錢에 이로운 일이요 불편한 것은 아니다.(78)

라고 하여 銅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는 않지만 무역하는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힘으로 원료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盜鑄하는 자가 적어서 行錢에 편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동전이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銅錢이 통용에 적합한 무게와 크기는 물론 모양이 정교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蔣英實과 같은 훌륭한 기능을 지닌 기술자를 구하여 공역을 담당하게 하고, 이들에게 祿俸을 후하게 주어 영구히 직업으로 삼도록 하며, 그 실적에 따라 상벌을 시행하여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79) 그리고 이러한 工程은 처음부터 국가

(77) 『磻溪隨錄』 卷 4, 田制後錄 下.

(78)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或以銅錫 非本國所產爲難 是尤不然 銅錫 雖非本國之產 而貿之 其價不甚高 故深山窮谷 草屋之人 酒食器外 如盆椀之屬 無不以銅 大小寺刹 或一縣 數十餘區 而一寺鍾磬 不知幾何 況貿以一國之力 而未足於錢貨乎 國無銅山 故民之盜鑄者少 是則便於行錢 非不便也

(79) 『磻溪隨錄』 卷 4, 田制後錄 下.

의 公的인 管轄下에 있는 한 관청이 맡아 진행하도록 하였다. 즉 처음에는 鑄錢都監을 설치하여 관할하게 하지만,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司贍寺에 맡겨 전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당시에는 각 衙門, 軍營 등의 독립, 분산적인 재정운영체제와 관련하여 중앙기관은 물론 지방 감영에서도 주전이 행하지고 있었다. 심지어 富民, 富商 등 민간 都給制에 의한 私鑄錢까지 허용되는 상황이었다.(80) 따라서 화폐주조에 대한 일원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유형원이 이처럼 화폐주조를 전담하는 관청의 설치를 강조한 것은 화폐제작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그가 누누이 강조하는 貨權在上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貨幣의 가치를 일정하게 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서는 額面價와 素材價의 격차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서는 안되었다. 그는 화폐의 액면가가 소재가와 工役費를 포함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81) 그리고 국가가 '物貨准式'을 정하여 錢貨와 物貨의 交換率을 公定하고(82) 이 기준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通貨量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그는 당시 적정수준의 通貨量을 국가의 常稅收入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常稅가 1년에 4, 5百萬 石이면, 1년에 鑄錢하는 수를 1, 2십만 貫으로 책정하고, 鑄錢한 총수가 7, 8百萬 貫에 달하여 통행하기에 넉넉하면 계속 만들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이렇게 鑄造된 동전의 유통과 정착을 위해서는, 선행조치로서 국가의 부세수취나 재정운영과 관련된 소비활동에 있어 일정 부분에 동전을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柳馨遠은 이전 시기에 있었던 行錢策이 중도에서

(80) 元裕漢, 1975, 『朝鮮後期貨幣史硏究』 제 3장 참조.

(81) 『磻溪隨錄』 卷 4, 田制後錄 下.
大抵定錢之式 以錢價 比銅價工費 不使相懸 以啓盜鑄及毁錢之弊可也

(82) 『磻溪隨錄』 卷 4, 田制後錄 下.
物貨准式(今參以古今通行國俗形便 以定式 收稅頒祿及凡元定支拂 則以此永定 不以豊凶 有所增減 至於公私行用 則但以錢二百文准銀一兩 一定不易 而餘皆隨其時貴賤
或以爲以錢四十文 准銀一錢 准米一斗爲當 若錢至於賤 而苟適時宜如此 亦無不可 唯在其時善稱物情 以定式耳 雖如此定之 一定之後 亦須永久不改

좌절된 가장 큰 이유를 전세징수와 녹봉지급에서 錢穀參半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田稅를 3分하여 2分을 米·布와 같은 현물로, 1分은 錢으로 거두게 하며, 御需 이하 百官과 아전, 하인, 군사의 祿俸 및 모든 관청의 支出 또한 같은 비율로 米·布와 錢을 참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처음 실시할 때 외방에 아직 충분히 돈이 확산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10분의 1이나, 5분의 1을 동전으로 받아 들이다가 점차 돈이 넉넉해지고 골고루 확산되기를 기다려 처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처음 錢納을 채택하는 시기에는 화폐의 외방확산을 위해 각도의 常稅 총수입을 헤아려 여름과 가을 사이에 官錢을 수송하여 1개 道에 2~4곳에 都會를 열고 원래 정한 錢價를 게시하여 민간인들이 사가도록 하였다.(83)

이와 아울러 화폐의 유통을 장려하기 위한 매개기능으로서 상업체제의 확대를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錢所以權百物 而流通之者 商賈也"(84) 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증대가 필요하였다. 앞에서 보았드시, 유형원은 都城의 部, 坊의 街路나 각 지방의 營, 邑, 鎭, 驛, 站은 물론 큰 마을에까지 적당한 수의 鋪子를 설치하여 상업종사자의 증대를 꾀하고자 한 바가 있다. 그리고 鋪子나 혹은 站店境에 세워진 숙박업소인 站店에서의 거래에는 모두 동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鋪子나 站店境의 설치는 그가 구상하는 國家의 地方統治 體制 및 상품유통체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었지만, 유통기구 내에 貨幣經濟를 침투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구상된 것이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柳馨遠의 貨幣政策論은 '貨權在上'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貨幣의 鑄造, 流通을 군주로 대표되는 국가가 장악하는 일종의 管理通貨制라 할 수 있겠다. 이는 商品流通機構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모든 상품유통을 국가의 管理 하에 두려고 하는 구상과 더불어 그의 '利權在上論'的 商業政策論의 성격과 지향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방안이

(83)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計各道常稅總數 及夏秋間量宜輸送官錢 一道二處或三四處 定都會懸其元定之直 許民就買 使無窘速可也 一歲如此以開其流 則後不復然而自能廣布矣

(84) 『磻溪隨錄』 卷 8, 田制後錄攷說 下.

라 할 수 있다.

5. 맺 음 말

이상에서 磻溪 柳馨遠의 상업관과 상업정책론을 살펴 보았다. 유형원은 17세기 조선사회의 현실 속에서 민생안정은 本業인 농업과 末業인 상공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즉 本業인 농업의 발전과 아울러 이를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상공업의 발전이 꼭 필요한 '務本補末'의 단계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업에 대한 유형원의 이와 같은 인식은 均田制인 그의 농업개혁론이 그러하듯이 三代의 古法·古制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17세기 경제현실을 분석하는 가운데 얻어진 것이었다. 그가 파악하는 三代社會는 井田制의 실시를 바탕으로 모든 생산계층에게 균등하게 토지가 분배되어 恒産이 가능한 사회였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생산한 물품이 화폐를 매개로 상인들에 의해 막힘없이 서로 유통되는 가운데 富國安民이 이루어진 사회였다. 그런데 17세기 조선의 현실은 三代社會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농업에서의 地主制 발달은 농업발전과 민생안정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었으며, 조선전기 이래의 지속적인 抑末政策으로 상공업 발전은 극히 미흡한 상황이었다. 그가 구상하는 國家再造方略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업개혁과 더불어 상공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진흥책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商業振興과 관련하여 유형원이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專業的인 商人層을 광범하게 육성하는 것이었다. 그가 전국적으로 설치하고자 했던 官設, 私設鋪子는 이러한 專業的인 商人들을 육성하고 그들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流通機構로서 구성된 것이었다. 둘째는 상공업 종사자들의 恒産을 보장하는 방안이었다. 이를 위해 유형원은 상공업 종사자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지급하는 한편 이들에게 가해지는 무절제한 수탈을 막을 수 있는 賦稅制度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나아가 국가의 財政運營 방식과 賦稅制度를 상품유통경제와 연관시켜 운영하는 한편, 도로의 정비와 운송수단을 재

정비하여 상품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유형원의 상업·상품류통경제의 진흥책은 그가 변법적인 개혁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國家再造의 목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그는 均田的인 土地分給制를 바탕으로 小農經濟를 안정시킨 가운데 종래 君主權과 民 사이에 매개되었던 향촌 내의 민에 대한 사적 지배를 배제하여 국가의 公的 支配力을 확보함으로써 조선 봉건사회를 개혁하는 국가재조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품유통경제 또한 중앙을 정점으로 하는 통일된 流通體制를 형성함과 아울러 군주로 대표되는 국가의 공적인 관리체계내에 편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商品流通機構와 貨幣制度를 개편할 것을 구상하였다. 상품유통기구의 개혁방안은 새로운 유통기구인 常設鋪子를 각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인 官廳所在地와 交通要地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설포자가 설치된 곳을 지방 상인들의 集團 居住地이자 상품유통경제의 거점으로서, 일종의 商業都市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이와 아울러 교통의 요지에 설치되어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政治·行政網 역할을 담당하는 站店에 商品流通機構의 기능을 더함으로써,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적인 상품유통망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그는 貢納制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관청에 貿備主人(一種의 貢人)을 두도록 하였다. 貿備主人은 관청으로부터 凶豊과 관계없이 一定額의 자금을 받아 官需品을 공급하는 어용상인으로서 富商大賈들을 국가의 관리하에 편입하려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그런데 유형원은 이들의 활동범위를 각 관청의 소재지로 한정함으로써 외방의 상품이 자연스럽게 관청소재지로 집산하도록 하였다. 이는 관청 소재지와 站店을 중심으로 그 지방의 유통망을 형성하고, 이를 다시 서울과 연결하여 서울을 전국적인 流通體制의 정점이 되도록 하여 國家의 管理가 용이하도록 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貨幣制度 개혁과 관련하여 유형원은 화폐의 鑄造·流通權을 君主로 대표되는 국가가 장악하는 일종의 管理通貨制를 제시하였다. 그는 화폐를 상품유통을 편리하게 하고, 모든 물건의 輕重을 稱量하는 유일하고 중요한 존재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화폐의 주조와 유통에 관한 모든 권한은 君主

에게 속해야 한다는 '貨權在上論'을 주장하였다. '貨權在上'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전 주조를 국가의 公的인 管轄下에 있는 한 관청이 맡아 진행하도록 하고, 유통과정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동전가치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額面價와 所在價의 격차가 일정수준 이상 나지 않도록 鑄造管理를 엄격히 하며, '物貨準式'을 정하여 동전과 物貨의 교환율을 公定하고, 이 기준이 항상 유지되도록 通貨量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화폐에 대한 그의 구상은 근대사회의 管理通貨制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柳馨遠의 商業論은 商品生産, 流通機構, 流通手段(貨幣), 商人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상업에 대한 국가의 管理體制를 강화하는 방안이었다. 그가 이처럼 상품유통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管理·統制를 강화하려는 목적은 각종 中間收奪을 배제하여 상업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그 利益을 國家와 民에게 돌리려는 것이었다. 유형원이 주장하는 '利權在上論'的 상업정책론의 목표는 바로 이러하였다. 이 점에서 볼 때 유형원의 상업관 및 상품화폐경제에 관한 개혁론은 군주권 강화 및 지주제의 혁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變法的인 國家再造 方略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자 : 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